

보도	2024.5.7.(화) 조간	배포	2024.5.2.(목)
담당부서	공매도특별조사단 공매도조사기획팀	책임자	실장 김회영 (02-3145-5630)
		담당자	팀장 심재호 (02-3145-5636)

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

-공매도특별조사단 출범이후 총 9사, 2,112억원 규모의 불법공매도 적발-

I. 개요

-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공매도 전담조직*을 설치하여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집중적인 조사를 수행해 왔으며,

* 공매도조사전담반 설치('22.6월), 공매도조사팀 전환('22.8월)

- 글로벌 IB 2사에서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최초로 적발됨에 따라 공매도특별조사단*을 즉각 출범('23.11월)시킨 후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.

* 단장 1명, 1개팀, 2개반

II. 글로벌 IB 전수 조사상황(잠정)

- **(조사대상)**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글로벌 IB 14사의 공매도 거래량은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약 90%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내 외국인 공매도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
- 14사를 중심으로 '21.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위반 가능성이 높은 종목·기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- **(조사 진행상황)** 글로벌 IB 총 14사 중 2사는 조치완료('23.12.22.) 하였고, 7사에서 불법공매도 혐의가 발견되었으며, 나머지 5사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진행 중입니다.

<글로벌 IB 전수조사 진행상황>

A	B	C	D	E	F	G	H	I	J	K	L	M	N
조치완료 (2사)		혐의발견 (7사)							조사중 (5사)				



- **(중간 조사결과(잠정))** 현재까지 확인된 9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164개 종목에서 총 2,112억원 수준입니다.

<글로벌 IB 중간 조사결과*>

(단위 : 개, 억원)

구분	글로벌 IB	종목수	위반금액	비고
完	A, B사	110	556	'23.10.16. 보도참고
혐의발견	C, D사	5	540	'24.1.15. 보도참고
	E, F, G, H, I사	29	628	금번 추가 발표
		20	388	
합 계(9사)		164	2,112	

* 추가 조사 진행 중으로 향후 위반규모 및 위반내용 등 변동 가능

- **최초 적발한 2사(A, B사)의 불법공매도(556억원 규모)에 대해서는 과징금(265억원) 부과 및 검찰고발 조치(증선위, '23.12.22.)를 완료하였습니다.**
-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7사(C, D, E, F, G, H, I사)의 불법 공매도 (1,556억원 규모*)를 적발하였습니다*.

* 지난 '24.1.15. C·D사에 대해 발표(540억원 규모)한 바 있으며, 조사진행 과정에서 C·D사의 위반규모가 확대(540억원 → 1,168억원)되고 E~I사의 위반혐의를 새로 발견(388억원)

□ **(발생원인 및 주요혐의)** 글로벌IB는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,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, 운영자의 과실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무차입공매도를 발생시킴

① **(대여·담보제공 주식 반환절차 미흡)** 외부대여 또는 담보제공된 처분제한주식에 대하여, 반환이 확정된 후 매도주문을 제출하여야 함에도, 확정 전 매도주문을 제출*하여 무차입 공매도 발생(C사, E사)

* 예시 : 외부에 담보로 제공되어 처분이 제한된 주식에 대해 반환절차 없이 소유주식으로 계산하여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

② **(차입확정 이전 공매도 제출)** 요청수량보다 적은 주식을 차입하거나, 차입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충분한 수량이 차입되었다고 착오하고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무차입 공매도 발생(D사, F사, G사)

* 예시 : 차입확정수량 입력 이전 공매도 주문을 승인·제출하거나, 주문 제출 이후 사후적으로 차입 관련 기록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에 하자 존재

③ **(내부부서 간 잔고관리 미흡)** 내부부서 간 주식대차 과정에서 既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하는 등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함에 따라 과다계상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무차입공매도 발생(D사)

* 예시 : A부서가 B부서에게 주식을 대여하였으나 동 거래내역이 반영되지 않아 A부서는 (종전의)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

④ **(수기입력 오류 등)** 차입수량을 오입력하거나,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입력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발생(C사, D사, H사, I사)

⇒ 불법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고관리 방식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.

III. 해외 금융당국과 협력 지속

- 해외소재 글로벌 IB에 대한 실효성 있고 신속한 조사 진행을 위해 해외 금융당국과의 조사협력 및 공조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.
-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홍콩 등 해외 금융당국과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및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

- 1 (실무협력채널 마련) 홍콩 감독당국과 조사 관련 주요 이슈를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실무협력 채널 마련
- 2 (반기별 화상회의 실시) 홍콩 감독당국과 반기별로 화상회의를 실시하여 양국의 공매도 관련 규제 및 불법공매도 조사 관련 주요 현안 논의예정
- 3 (공조 강화) 국제증권감독기구 다자간양해각서(MMoU 및 EMMoU)에 따라 필요시 자료 징구 및 조사 공조 등 협조를 요청

IV. 향후 계획

- 현재까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하여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신속히 제재절차*에 착수하는 한편, 나머지 IB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.
- * 다만 위반혐의는 향후 제재절차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- 향후에도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불법 공매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
- 또한, '24.5월 중 홍콩의 주요 글로벌 IB와의 현지 간담회를 통해 한국 공매도 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 등을 설명하고,
-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사항 및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의견 등을 청취하여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예정입니다
- 한편, 금융감독원은 현재 진행중인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참고

DMA(Direct Market Access) 이용 공매도에 대한 사실관계

□ 고빈도매매자 등 외국 투자자들은 글로벌 IB와 스왑거래를 통하거나 거래소에 직접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을 통해 한국주식을 매도

① 외국 투자자들이 글로벌 IB와 스왑거래시 글로벌 IB는 동 포지션을 헤지하기 위해 거래소로 주문을 제출*할 때 주로 DMA 방식을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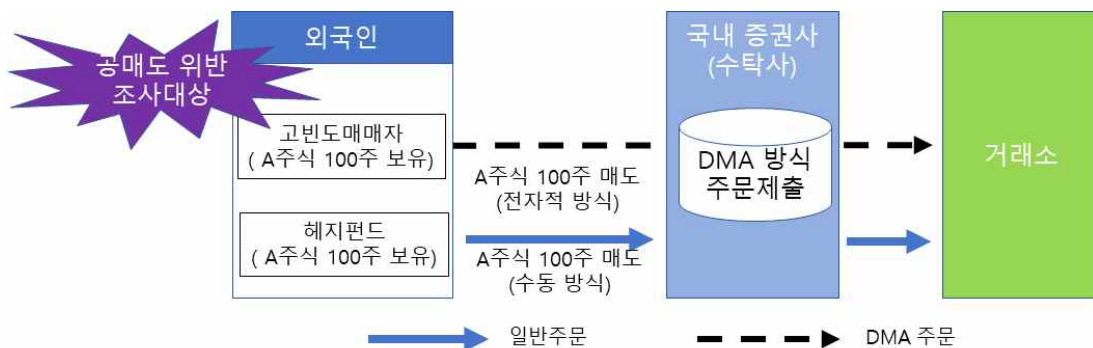
* 이 경우 글로벌 IB가 해당 주식 잔고를 보유하고 있으면 일반매도, 없으면 주식을 차입한 후 차입공매도로 주문을 제출

- DMA 방식을 통해 제출된 공매도 주문의 주체는 글로벌 IB이며, 금번 글로벌 IB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



②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접 거래소로 주문 제출시 DMA 방식을 이용하기도 하며, 이 경우 공매도 주문의 주체는 외국인 투자자 본인임

- 동 거래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, 위반혐의 발견시 조사 및 조치 중



◇ DMA는 일반주문 방식에 비해 주문의 적정성 확인을 간소화한 주문 제출 방식으로, 금감원 조사 및 거래소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됨